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

○ 입주 신청 및 선정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전임 및 비전임	총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총장발령 자	해당 없음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해당 없음
	B동 (스튜디오, 23.02㎡)	단독 거주 or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신청 제한		①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서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③ 입주예정일이 BK관 직전 퇴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④ 대학원생에 한하여 관악생활관의 가족생활관 또는 BK생활관 거주 경험이 있는 자 ⑤ 교원 및 연구원에 한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⑥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BK관 최소 입주 기간인 3개월 이내에 퇴거한 경험이 있는 자		
신청/선발/등록 절차		소속기관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신청 ↓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에 대기번호 및 입주 대상자 통보 ↓ 입주 대상자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에 입주 날짜 예약 및 생활관비 계좌 납부, 입주 등록 서류 작성, 입주안내 받은 후 입주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주신청 ↓ 소속기관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에 대기번호 및 입주 대상자 통보 ↓ 입주 대상자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에 입주 날짜 예약 및 생활관비 계좌 납부, 입주 등록 서류 작성, 입주안내 받은 후 입주
신청 기간		입주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공문 도착 일시, 대학원생(연구생)의 경우 소속 기관 담당자 승인 일시 기준 ※ 공문접수 시 기관장 최종결재로 발송 요망		
발표 일시 및 방법		입주 신청 마감일 후 대기자 및 선정자 통보(공문발송) ※ 선발 순서(대기번호)는 발표하는 월의 말일 까지 유효함		
입주 허가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2년 (교원 및 연구원은 임용기간 유지 시, 대학원생(연구생)은 학적 유지 시) ※ 거주 연장 기간은 운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 - 대학원생 1회, 교원 최대 총 거주 기간 7년, 연구원 총 거주 기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전임 교원 구분(근거: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 전일제: 강의교원, 연구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 비전일제: 겸임교원, 외래교원
-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 초빙교원, 객원교원

○ 구비 서류

구분	외국인	내국인
교원/ 연구원	<p>신청서</p> <p>① BK생활관 신청서 ②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③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 가족의 여권 사본</p> <p>※ A등 신청자와, B등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의 여권사본 필요</p> <p>입주시(붙임1 참조)</p> <p>① 건강진단서 (필수 항목: 흉부 X-ray 검사) ② 홍역예방접종 증명서</p>	<p>신청서</p> <p>① BK생활관 신청서 ② 임용공문 or 임용예정확인서 ③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서울시 재산세 여부 포함 필수 (서울시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미기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초빙/객원 교원만 해당) 소속기관의 전일제 교원 증명서 제출(소속기관 직인 포함)</p> <p>입주시(붙임1 참조)</p> <p>① 건강진단서 (필수 항목: 흉부 X-ray 검사) ② 홍역예방접종 증명서</p>
대학원생/ 연구생	<p>신청서</p> <p>① BK생활관 신청서 ②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 배우자의 여권 사본 ④ (해당자만) 배우자가 본교 학생인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관련 증명서</p> <p>입주시(붙임1 참조)</p> <p>① 건강진단서 (필수 항목: 흉부 X-ray 검사) ② 홍역예방접종 증명서</p>	해당 없음

※ 건강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유효

※ 외국인의 경우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lth Form'을 의료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제출 가능
(병원 직인/서명 필요)

○ 생활관비 및 할증료

(단위: 원)

구분	A동(가족실)				B동(스튜디오)			
	관리비	보증금	할증료		관리비	보증금	할증료	
			3년 초과 4년 이하 (20%)	4년 초과 (40%)			3년 초과 4년 이하 (20%)	4년 초과 (40%)
금액	630,000	1,890,000	126,000	252,000	398,000	1,194,000	79,600	159,200

○ 퇴거 및 연장

구분	퇴거 신청	거주 기간 연장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교원 또는 연구원 중 임용 또는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대학원생 중 졸업, 퇴학, 제적, 제명 또는 2개 학기 이상 연속 휴학한 경우 ④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⑤ 관리비를 납부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⑥ 허위로 입주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⑦ 그 밖에 관장이 공동생활 및 BK관 운영원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원 또는 연구원 임용이 예정 및 확정된 경우 ② 신분 변동 없이 교원 또는 연구원 신분으로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대학원생(연구생) 신분으로 입주 후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대학원생(연구생)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신청방법	<p>포털 로그인(mySNU) > 학사정보(학사행정) > 학생생활관(인사/급여/복지) > BK생활관(국제관) > 퇴사신청</p> <p>* 포털 계정이 아직 없을 경우, 먼저 아이디(ID)를 신청한 후 로그인해야 함</p>	<p>소속기관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접수</p> <p>*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BK생활관 연장신청서 ②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or 연구생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p>* 공문접수 시 기관장 최종결재로 발송 요망</p>
신청기간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	거주 기간 만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신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 - 퇴거 예정자는 입주 당시의 시설 및 청소 상태로 원상 복구한 후 정해진 퇴거 절차에 따라 퇴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단, 총 거주기간은 교원의 경우 최대 7년, 연구원의 경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행세칙 시행 전에 입주한(입주 신청한 경우 포함) 대학원생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입주 허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유의사항

1. 신청

- 1) 학생신분은 본인과 배우자 2인이 B동(스튜디오)에 거주 할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동반 가족사항에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야함. (A동을 신청하거나 법적배우자 정보 기록이 없을 경우 입주신청취소)
- 2) 대학원생의 경우 단과대 승인 담당자가 '구비서류-외국인 대학원생/연구생-신청서'에 해당하는 서류 확인 후 승인(서류 원본은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3) 포털 계정이 아직 없을 경우, 먼저 아이디(ID)를 신청한 후 로그인해야 함
- 4) 공문접수 시 기관장 최종결재로 발송 요망
- 5) 신청일자는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공문 도착 일시, 대학원생 및 연구생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 승인 일시 기준

2. 입주 자격 상실

- 1)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 제출과 관리비 납부를 모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입주 자격 상실**
- 2) 서류 제출 시, 위장전입 또는 입주자격, 동반거주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주 자격 상실**
- 3) 입주 후 생활관에 거주하는 동안 퇴거대상자 관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진 퇴거해야 하며 적발 시 즉시 강제 퇴거 조치됨
- 4) 호실 무단양도 및 대리입주로 적발될 경우, 즉시 강제 퇴거 조치됨

3. 상황별 제출 서류

1) 신청 시

가. 외국인 대학원생(연구생 포함)이 B동(스튜디오)을 신청할 경우

- BK생활관 신청서 +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 + 배우자의 여권 사본 + (해당자) 배우자의 재학관련 증명서

나.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A동(가족실)을 신청할 경우

- BK생활관 신청서 +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 + 가족의 여권 사본

다.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B동(스튜디오)을 배우자와 같이 거주할 경우

- BK생활관 신청서 +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 + 가족의 여권 사본

라.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B동(스튜디오)을 단독 거주할 경우

- BK생활관 신청서 +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마. 내국인 교원 및 연구원

- BK생활관 신청서 + 임용공문 or 임용예정확인서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미기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 내국인 교원 중 초빙교원, 객원교원의 경우

- BK생활관 신청서 + 임용공문 or 임용예정확인서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미기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속기관의 전일제 교원 증명서 제출(소속기관 직인 포함)

2) 입주 시

가.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필수 항목: 흉부 X-ray 검사)
-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나. 유의사항

-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관련 상세 안내 사항은 붙임 1 참조
- 건강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유효
- 사용허가서 작성 시(입주 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 자격 상실
- 외국인의 경우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lth Form'을 의료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제출 가능
(병원 직인/서명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전화 02-881-9038)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안내

1. 건강진단서 관련 안내

- 진단서 유효 여부
 - “진단서”, “건강진단서”로 발급받아야 함
 - 결과서, 소견서, 통보서, 확인서 등 제출 불가
 - 보건소, 종합병원, 내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기관명칭, 기관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종합 판정란 정상자에 한해 입주 가능
- 검진 항목
 - 결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ray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의료 기관별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음(필요 검진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진단서 유효기간 : 입주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유효

2. 홍역예방접종 증명서(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관련 안내

-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출력
- 접종 사실 확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만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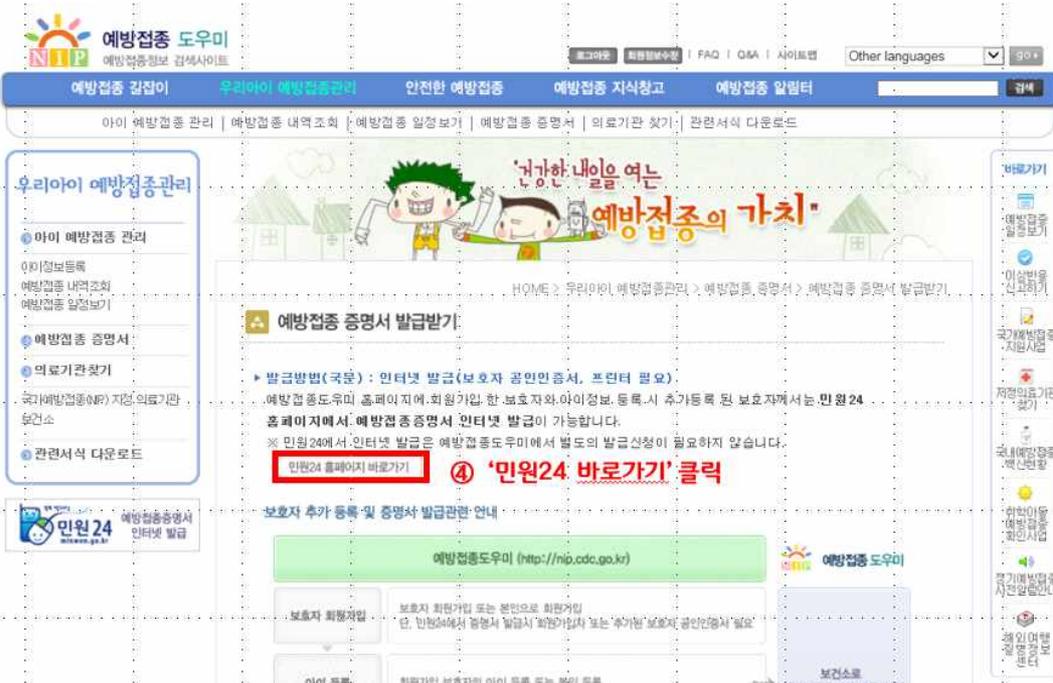
구분	제출 서류
홍역 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접종 사실은 있으나 내역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항체 검사를 실시한 후 ‘홍역항체검사 결과서’ 제출 ※ 접종한 병원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홍역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접종 사실이 없는 경우(미접종자)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홍역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 미접종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 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접종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3)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방법(접종 사실 확인 방법)

①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접속 > 회원가입 > '예방접종증명서발급' 클릭



②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



③ (민원24 홈페이지) '즉시발급민원' 클릭 > '예방접종증명'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Minwon24 homepage. A red box highlights '즉시발급민원' in the '자주찾는 민원' section. A red arrow points to the '예방접종증명' link in the '민원신청' menu. Another red box highlights '예방접종증명' in the '민원신청' sub-menu. A third red box highlights '예방접종증명' in the '자주찾는 순' table.

번호	민원사무명	온라인신청	소관부처	수수료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안전행정부	무료
2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 신청	신청	국토교통부	무료
3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교부 신청	신청	국토교통부	발급 3000 열람 3000 본인소유 3000
4	지적도(임야도)열람 등본신청	신청	국토교통부	무료
5	지리정보체계확인서	신청	국토교통부	초료로 장
6	지방세특별납세증명	신청	안전행정부	초료로 장
7	자동차 등록증(부등본)발급,열람신청	신청	국토교통부	무료
8	지방세세목과세증명	신청	안전행정부	무료
9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병무청	무료
10	출입국 사증증명	신청	법무부	무료
11	농지장부 등본교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무료
12	예방접종증명	신청	보건복지부	무료
13	개발종사자가 확인	신청	국토교통부	초료로 장
14	문건건축승인발급	신청	경찰청	무료
15	공동주택가격 확인	신청	국토교통부	초료로 장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보건복지부	무료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신청	교육부	무료
18	검정고시 합격증명	신청	교육부	무료
19	검정고시 성적증명	신청	교육부	무료
20	국가대소선고 사실증명	신청	법무부	무료
21	통과학교 성적증명	신청	교육부	무료

④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증명서 출력

The screenshot shows the '예방접종증명' application form. A red box highlights the '민원신청하기' button. The form fields are as follows:

신청인: [선택] | 생년월일: [선택] | 년 월 일

교부대상자: [선택]

신청내용:

- 접종구분: 전체 필수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개별선택
- 필수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풍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 수두 Hib 폐구균 폐렴
- 기타예방접종: 신종수근골절염 인플루엔자 사형간염 말라리아 콜레라 포티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헵토스피라증

수령방법: [선택]

신청일: 2014년 11월 18일

⑦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바구니에 담으신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입시 저장은 최장은 일주일동안, 비저장은 보관유저 종료시까지 보관됩니다.

민원신청하기 | 민원바구니담기 | 임시저장 | 취소

⑤ 증명서 출력 및 접종 내역 확인

문서확인번호: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19 년 월 일
		성별 Sex	여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자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MR	1	2001년 6월 20일	기관미상
- 이하 미백 -			
↓			
<p>① 84년 이전 출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차수가 2차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p>② 85년 이후 출생자</p> <p>가. 접종일자가 2000년 이후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차수가 1차로 표기되어 있어도 무방함 - 해당 서류 제출 가능 <p>나. 접종일자가 2000년 이전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차수가 2차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2차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불가 - 2차 접종 사실 확인 또는 추가 접종 후 '홍역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p>「감염병의 예방법」 제 2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증명서 We hereby certify the above-mentioned person to be free of the above-mentioned infectious disease.</p>			
<p>* 이 증명서의 접종내역은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접종내역입니다. * 증명서에 누락된 내역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민원24(minwon.go.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해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를 문서확인프로그램 설치)을 하실 수 있습니다.